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863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창업 및 이전기업 법인세 감면 특례 신설(문대림의원안)	3

I. 개요

1.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86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문대림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7. 31.
- (3) 회 부 일 : 2025. 8.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하고 해당지역에서의 분산에너지 기술 고도화를 위한 각종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혁신적인 에너지사업 및 전력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업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기대감이 높지만 기술적 규제 특례 이외에 실질적인 지원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기업 등의 투자요인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창업 및 이전기업 법인세 감면 특례 신설(문대림의원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안 제121조의36 신설 등) ○ 감면대상: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 감면율: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감면한도: 없음 ○ 사후관리: 사업장 폐업, 법인 해산, 사업장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사후추징 ○ 적용기한: 2028. 12. 31. ○ 중복지원 배제, 기한 후 신고 등의 경우 감면 배제, 최저한세 적용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 문대림의원안 2025. 7. 31. 발의(의안번호 11863)

□ 개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¹⁾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기존 사업장을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10.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란 제3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구역전기 공급 구역(「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특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일부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 전기 공급구역 전체를 포함한다.

제33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분산에너지란 에너지의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를 의미하고, 에너지 사용지역 인근에서 발전원이 설치 및 사용됨에 따라 장거리 송전망 건설 및 대규모 발전소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고 발전원 분산화에 따라 전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²⁾

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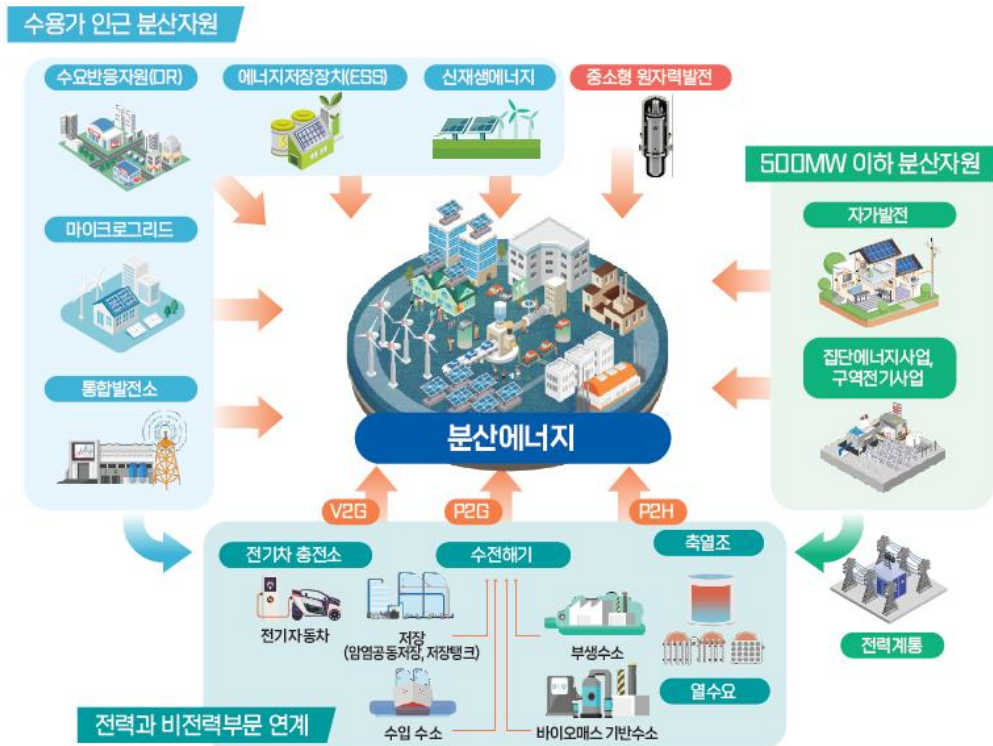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한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2)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2001024000.do>)

[분산에너지의 범위]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 한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 등을 특
화지역으로 지정하여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VPP)³⁾, 전력거래 특
례 등 혁신제도 실증을 통해 미래형 전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
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시·도지사의 신청 및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의 지정·고시 절차를 거쳐 지정된 지역을 말함.

3)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의10. “통합발전소사업”이란 정보통신 및 자동제어 기술을 이용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
지자원을 연결·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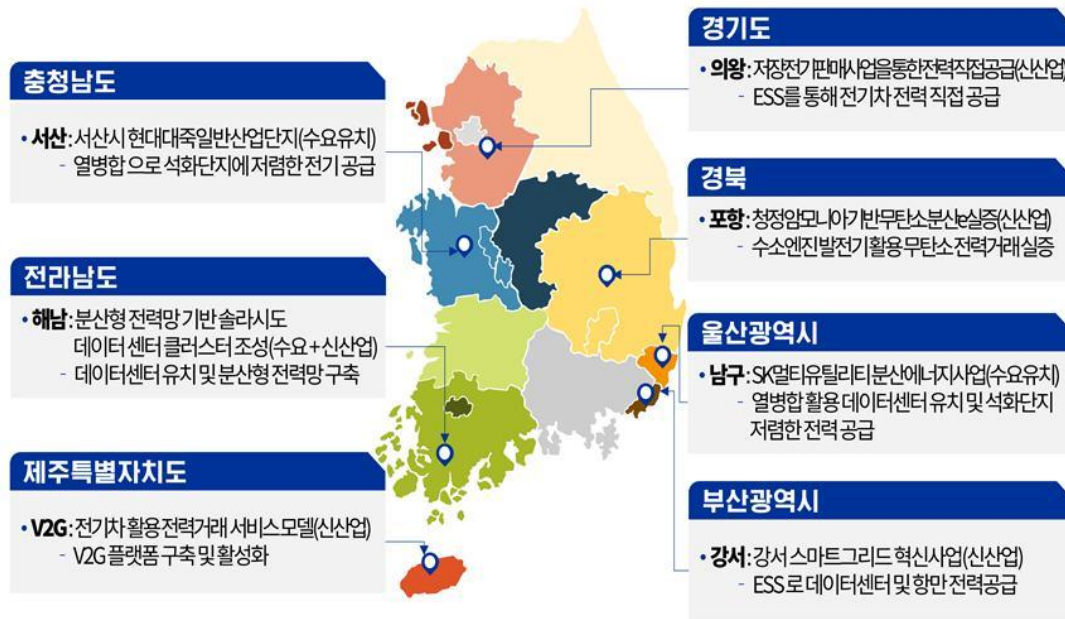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분산에너지사업”이란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업을 말한다.

라.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10에 따른 통합발전소사업 중
분산에너지자원을 활용한 사업

2025년 8월 기준 경기도 의왕, 충청남도 서산, 경상북도 포항, 전라남도 해남, 울산 남구, 부산 강서구, 제주특별자치도 등 7개 지역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후보지로 선정되었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후보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개정안은 향후 선정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기존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현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

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분산에너지사업”이란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나. 구역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

다.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라.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10에 따른 통합발전소사업 중

여금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규제 적용 제외 및 규제권한 이양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특화지역 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분산에너지자원을 활용한 사업

마. 신재생에너지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바.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사. 수소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

아. 저장전기판매사업: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판매하는 사업

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차.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카. 수요관리사업: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수요관리 사업자가 수요반응자원을 이용하여 발전기의 전력생산 및 수급 조절 기능을 대체하는 사업

3. “분산에너지사업자”란 분산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자

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제3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제외나 규제권한 이양(이하 “규제특례등”이라 한다)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제특례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이하 이 조에서 “전력시장”이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사고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고, 전력이 남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제2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전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의 전기공급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규제특례와 더불어 입주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의 수준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인데, 이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보다 강화된 혜택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행법상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의 경우 개정안과 동일하게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지만, 연구개발특구,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다른 특구의 경우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액감면이 적용됨.

[「조세특례제한법」 상 지역특구 감면제도 개요]

구 분		감면요건	감면내용
위기지역 창업기업(§99의9)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 * 2025년 6월말 기준 해당지역 없음	5년 100% 2년 50%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 구역(낙후지역), 여수해양박람회, 새만금투자진 흥지구, 평화경제특구 (§121의17)	창업 기업	제조업·엔지니어링·전기통신업 등 : 20억원 이상 투자 + 30명 이상 고용 연구개발업 : 5억원 이상 투자 + 10명 이상 고용 물류업 : 10억원 이상 투자 + 15명 이상 고용	3년 100% 2년 50%
	개발 사업자	개발사업비 500억원 이상	3년 50% 2년 25%
제주투자 진흥지구 (§121의9)	입주 기업	총사업비가 2천만달러 이상의 관광업, 5백만달러 이 상의 문화산업·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청소년수련 시설사업·케도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교육사업· 의료산업·교육원·연수원·첨단기술활용산업 등	3년 100% 2년 50%
	개발 사업자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	3년 50% 2년 25%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12의2)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산업	3년 100% 2년 5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121의8)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산업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121의9)		제조업 : 1천만달러 이상 + 100명 이상 고용 물류업 : 5백만달러 이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121의20)		문화 관련 산업 : 5억원 이상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 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청소년수련시설사업·교 육원운영사업 : 30억원 이상 * 해당지역 : 광주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121의21)		금융 및 보험업 : 20억원 이상 + 10명 이상 고용 * 해당지역 : 서울, 부산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121의22)		보건의료기술산업(해당지역: 충북 오송, 경북 대구) 식품산업(해당지역: 전북 익산)	

둘째, 현행 제도 하에서도 수도권 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한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이전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최대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⁵⁾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은 5년간 100%,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⁶⁾ 특정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 창업기업 및 사업장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액감면이 적용됨.⁷⁾

셋째, 현재 도심융합특구,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 등 각종 지역특구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요구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그 외 다른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전국의 특구화 현상이 심화되어 과세지역과 비과세지역으로 이분화가 초래될 우려가 있음.

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6)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7)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문 의 처
02)6788-5154